

공급업체 ESG 평가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2	2023.12.07

1. 목적

- 1.1 본 문서는 효성티앤씨(이하 '회사')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ESG경영의 필수요소인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회사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공급업체가 ESG 리스크 평가 항목에 대해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다. ESG평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한다.

2. 적용범위

- 2.1 본 정책은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공급업체에게 적용된다.
- 2.2 ESG리스크 평가는 회사의 주요 비즈니스인 섬유 부문의 중점 관리 공급업체(섬유 부문 구매액 80% 범위내 내/외자 공급업체, 섬유 부문 구매액 95% 범위내 내자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3. 평가, 실사 주기 및 방식

- 3.1 회사는 중점 관리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3.2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ESG평가를 별도로 수행한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ESG평가 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국내) 한국ESG평가원(KCGS) / (국외) MSCI, Ecovadis
- 중소기업 : 상기 동일 및 중소벤처진흥공단 ESG 진단 보고서

- 3.3 공급업체는 3.2에 해당하는 기관의 ESG평가 결과 미보유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평가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 3.4 ESG 리스크 평가 기준은 상기 평가 요소의 등급에 따라 '낮음', '보통', '높음'으로 3단계로 판단한다.

4.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요구 방식

- 4.1 회사 내부 공급업체 ESG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 기준에 '낮음'으로 판단되는

공급업체 ESG 평가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2	2023.12.07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1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을 요청하며, 제출 후 차년도에 개선 추진 점검을 수행한다.

4.2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파견한 업체를 통한 교육,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급업체의 ESG 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5. 공급업체 ESG 리스크 관리영역

5.1 회사의 공급업체 ESG리스크 관리영역은 효성그룹 공급업체 행동규범을 근거로 한다.

5.2 회사의 공급업체 ESG 평가항목은 ‘효성그룹 공급업체 ESG경영 가이드북’의 평가문항을 근거로 한다.

끝.